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02
----------	-----

2019년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자 : 홍성룡 의원 등 75인
- 나. 제 안 일 : 2019년 8월 1일
- 다. 회 부 일 : 2019년 8월 13일
- 라. 상 정 일 : 제28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9월 3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홍성룡 의원)

가. 제안이유

- 일부 일본 기업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전쟁물자 제공 등을 위하여 우리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였음.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및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서울특별시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2)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 기관 및 금액을 규정함(안 제3조).
- 3)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4)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5)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문화 조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 : (2019.8.19.~8.26.)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제정안은 대일항쟁기 일본 전범기업 제품 등에 대해 서울특별시의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범기업의 정의, 적용대상 기관 및 대상금액 범위,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 관련 문화 조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조문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공식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정의)	- “일본 전범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1.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동원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힌 기업 2. 대일항쟁기 이후에 설립된 일본기업으로서, 제1호의 일본 전범기업 자본으로 설립되었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3. 가 및 나에 따른 기업을 흡수합병한 기업
제3조(적용대상 기관 및 금액)	- 적용대상 기관은 서울특별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시의회사무처, 시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출자기관 - 공공구매 대상금액은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금액 미만으로 함.
제4조(시장의 책무)	- 시장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산 제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제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시장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중장기 계획, 교육 및 홍보, 관계 기관과의 협력, 기타 필요사항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일본 전범기업과의 거래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조문체계	주요 내용
제7조(자치구에 대한 권장)	- 시장은 자치구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 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문화조성 등)	- 시장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지양하는 문화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시장은 문화조성을 위하여 문화행사,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정부부처,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공포일부터 시행

- 대일항쟁기인 1938년 일본은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우리 국민을 전범기업이 운영하는 군수공장, 토건, 탄광소, 군 소속 작업장 등에 강제동원하여, 일하다가 죽거나 신체적 불구를 당하는 등 가혹한 노동 착취를 당하였음.

※ 일본군 위안부 동원수를 제외한 조선인 강제동원 총수는 782만 7,355명임. 이 중에서 노무 동원이 755만 4,700명으로 가장 많았음. (출처: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자료).

-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에 대한 불법적 강제동원에 대하여 별다른 구제나 공식사과를 회피하고, 오히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인용 판결에 대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 제조관련 소재를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한데 이어 한국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사실상 경제보복까지 자행하고 있는 실정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인용 판결 경과〉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의 유족들은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일본 법원에 강제동원 피해 관련 소송을 제기해 왔으나 모두 패소하였고, 다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음.
- 일례로, 강제징용 피해자(고 여운택 등)는 1997년 일본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

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한·일 양국과 국민들 재산, 권리 등에 관한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2003.10.9.) 하였음.

- 이후 200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30일,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시켰음.

< 강제징용 피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경과 일지 >

1965년 6월 22일	한일, 국교정상화 기본관계 조약·재산 및 청구권협정 체결
1997년 12월 24일	피해자 여운택·신천수 씨,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상대로 소송 제기
2001년 3월 27일	오사카 지방재판소, 원고패소 판결
2002년 11월 19일	오사카 고등재판소, 항소기각 판결
2003년 10월 9일	일본 최고재판소, 상고기각 판결
2005년 2월 28일	피해자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 씨, 서울중앙지법에 신일철주금 상대로 소송 제기
2008년 4월 3일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일본 재판부의 판결이 국내에서도 효력이 있으며, 신일철주금이 옛 신일본제철을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
2009년 7월 16일	서울고법, 항소기각 판결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파기환송(일본재판부의 판결은 헌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신일철주금은 신일본제철을 승계한 기업이다.)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법, 신일철주금에 피해자들 1명당 1억 원씩 배상 판결
2018년 7월 20일	서울중앙지법,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의혹 수사 (해당 소송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사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개입 정황)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신일철주금에 피해자 1인당 1억 원 배상 최종 확정 판결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

< 일본 정부의 보복 >

- 일본 대기업을 조사비용을 출자하여 행방불명된 징용자를 찾고 사죄 기념비를 세우는 등¹⁾ 활동을 한 중국의 경우와는 달리,
-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하여 일본 총리는 “국제 재판을 포함해 모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일본 외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강제징용을 보상하라”는 발언을 하며 우리 대법원 강제 징용 배상판결 수용을 사실상 거부하는 등, 아직까지도 불법적 식민지배와 강제징용에 대하여 별다른 구제나 공식사과를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 나아가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 제조관련 소재를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하는데 이어 한국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사실상 경제보복까지 자행하고 있는 실정임.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사건 진행 경과 >

2019년 1월 2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내 신일철주금 소유 자산 강제집행 신청
2019년 1월 9일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 효력 발생 일본정부의 한일청구권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로서 외교적협의를 요청
2019년 5월 1일	신일철주금 압류자산 매각명령 신청(대구지법 포항지원, 울산지법)
2019년 5월 20일	일본: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 요청
2019년 6월 19일	한국: 한일기업 출연재원으로 강제징용 위자료 지급 제안
2019년 7월 1일	일본: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한국 수출규제 발표
2019년 7월 7일	일본: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하는 시행령 공포
2019년 7월 23일	미쓰비시중공업 압류자산 매각 명령 신청(대전지법)
2019년 8월 2일	일본: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 법령 개정안 각의 결정
2019년 8월 14일	한국: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19년 8월 28일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시행
2019년 9월 3일	한국: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시행

※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1조 및 별표 6의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에 따라 수출허가 신청 서류의 일부를 면제하는 등 관련절차를 간소하게 우대하는 국가(29개국)

- 한편, 일본과 같은 시기의 전범국가인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1970년 12월 7일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폴란드 유대인 위령탑 앞에 무릎을 꿇고 나치 만행에 대한 사죄를 시작으로, 이후 매년 계속해서 나치 만행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표명해 오고 있음.
- 또한 현 독일 총리 메르켈은 2013년 1월 히틀러 권력 장악 80주년과 세계 홀로코스트 기념일을 앞두고 "독일은 나치의 온갖 범죄, 2차 세계 대전 희생자 그리고 유대인 대학살에 대해 영원한 책임이 있다(2013.1.)" 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음.

※ 참조: 내일신문 "일본이 배워야 할 독일의 '과거청산'(2013.7.11.) 중.

1) 연합뉴스 2015. 7. 24. "미쓰비시, 강제노역 중국 노동자에 사과·보상...한국만 제외" 기사 참조

- 또한 전후 배상과 관련하여 국가간 법적 문제가 이미 해결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독일 정부와 독일 기업은 기금(약 6조원)을 마련하여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라는 재단을 설립하여, 2차대전 당시 독일 정부와 기업에 의해 징용된 이들에 대한 배상까지도 책임지고 있으며, 그 결과 가장 좋아하는 나라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전쟁 피해국인 프랑스인들의 약 60%가 독일을 선택하기도 하였음.

※ 참조: EBS 지식채널© 제425화(2008.05.19.) 중.

- 이에 따라 시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구매에서 만큼은 일본 전범 기업 제품 사용을 지양하도록 노력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일본으로 하여금 올바른 사죄와 함께 경제 보복을 중단토록 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보임.
- 다만,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국회의 입법 동향, 동 조례안과 같이 발의된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추진 동향²⁾, 시민주도의 자발적 일본제품 불매운동 및 중앙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감안하여 제정 시기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국회 입법 동향〉

- 국회에서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우리 정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와 배상 등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제한하려는 입법 노력이 있었음.
- 이명수 의원(외 18인)은 2010년 8월 과거사 미청산 전범기업에 대한 국가발주 입찰을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통상마찰 및 「정부조달협정」 위반 우려(국회 법률 개정안 검토보고서 참조)를 이유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2011.9.1., 부대의견 채택) 되어, 폐기(2011.10.18.)된 바 있음.

2)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를 발의 또는 발의 예정인 17개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이 일본대사관 앞에 모여, 조례안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2019.8.14.)한바 있음.

- 또한, 김정우 의원(외 11인)은 2016년 12월 전범기업이 투자하여 국내에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과외의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목적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을 추진한바 있으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WTO GPA 의정서) (2012. 3. 30. 채택, 2016. 1. 14. 대한민국에서 발효) 제4조의 일반원칙에 규정된 ‘비차별’³⁾에서, 계약 외의 사유를 들어 특정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우려(국회 검토보고서 참조)를 이유로, 소위원회에 회부(2017.7.17.)되어 계류 중에 있음.
- 마지막으로, 김광수 의원(외 27인)은 2018년 12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와 피해자 명예회복을 회피하고 있는 태도를 규탄하며,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수용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에 따른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였으나, 소위원회 회부(2109.7.3.)되어 계류 중에 있음.

〈일본 제품 불매 운동〉

- 시민 주도의 일본제품 불매운동
 -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2019년 7월)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일본산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발표(2018.8.15.)되었고,
 - ※ 참조: 헤럴드경제 “국민 10명 중 7명, 일본 제품 불매운동 참여하고 있어”(2019.7.29.) 중.
 - 금융감독원 자료(2019.8.15.)에 따르면 7월 마지막주 일본 주요 브랜드 가맹점 신용카드 매출액이 지난해 동기간 대비 48% 감소하는 등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 일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 참조: 매일신문 “일본 불매운동 효과 무섭네”(2019.8.15.) 중.
- 관 주도 불매운동 지양 청원

- 3) 제4조 일반원칙 비차별 1. 협정 적용대상 조달에 관한 죄와 관련하여, 각 당사자(조달기관을 포함한다)는 다른 당사자의 물품과 서비스, 그리고 어느 당사자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당사자의 공급자에게, 자신(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이 다음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즉시 그리고 조건 없이 부여한다.
- 가. 국내 물품, 서비스 및 공급자, 그리고
 - 나. 다른 당사자의 물품, 서비스 및 공급자
2. 협정 적용대상 조달에 관한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조달기관을 포함한다)는
- 가. 외국인과의 연계 또는 외국인 소유의 정도에 근거하여,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를 국내에 설립된 다른 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아니한다. 또는
 - 나.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가 특정한 조달을 위하여 제공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가 다른 당사자의 물품 또는 서비스라는 점에 근거하여 그 공급자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 한편, 일본 제품 불매, 공사 발주 시 일본산 자재 제외, 일본 지역 공무 출장·연수 배제 등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관주도의 불매운동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 소지가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매운동을 주도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례도 발생하였음,

※ 참조: 쿠기뉴스 (지자체 잇단 불매운동 동참에 ‘우려’ 목소리 ↑ “국민이 하겠다”) 2019.8.7.

※ 청와대 국민청원 중 불매운동에 관 참여 배제를 요구하는 청원 내역

- 서울 한복판에 NO Jpan 깃발을 설치하는 것을 중단해 주십시오(2019.8.6. 참여인원(2019.8.18.현재 20,698명)).
- 정부 청원을 빌려 지방자치단체에게 일본 불매운동 주도를 하지 말라는 당부를 드립니다(2019.8.6., 참여인원 867명).

〈 중앙정부 외교적 노력에 대한 본 조례 영향 관련 연구 〉

한국경제연구원, “일본경제 제재의 영향과 해법”(2019.7.10.)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범기업 제재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경우, 국제법 위반 여부를 쟁점 삼아, 오히려 일본의 수출규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 우리 정부의 외교적 협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한·일 간의 감정적 경제보복 강도가 강해질수록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보복 보다는 외교적 노력이 요구됨.

〈 재무국 제출 의견 〉

○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함. 다만, 조례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제반 사항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시장의 조달사무에 관한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규정에 관한 검토
-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 및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범위 등 관련 규정의 명확화
- 현행 지방계약법령 하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므로 조례안의 시행 가능한 범위 검토

나. 조례안 세부 내용 검토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른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음에도 공식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을 밝히고 있음.
- 이를 통하여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공공구매 제한을 통해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다만, 본 조례안의 근거인 「강제동원조사법」은 관련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적 인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일본 전범기업 용어를 정의하거나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

〈 관계 법령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강제동원조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이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를 각 호에 규정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 전범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을 강제 동원하여 국민에게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
2. 대일항쟁기 이후에 설립된 일본기업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자본으로 설립되었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업을 흡수합병한 기업

- 안 제1호는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정의(‘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강제동원 등으로 국민에게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를 준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준용 법령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관계 법령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제1호에 따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6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

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제2항제4호나 이 법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다.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90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4.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

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7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생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미수금피해자"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6호에 따라 미수금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행정안전부 제출(2019.8.22.) 자료 “일제 강제동원 현존 기업 현황(‘12년 발표)”,에 따르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2012년 현재 강제동원 기업 중 현존기업 299개(기업명 기준)을 선정하였음.

이를 이명수 국회의원이 제출받아 보도자료를 통해 ‘전범기업’으로 명명하기는 하였으나, 입법화 되지 못하였는바, ‘전범기업’의 법령상 정의는 없음.

- 안 제2호는 ‘대일항쟁기 이후에 설립된 일본기업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자본으로 설립되었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하였으나, ‘일본기업’이 일본에 본점을登記한 기업에 한정하는 것인지 또는 등기사항의 일본과 관련이 있는 기업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와 ‘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잦은 변동이 예견된다고 하겠음.
-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업을 흡수합병한 기업’으로 정의하였는바, 이 또한 국내법인 「상법」에 따른 흡수합병에 한정할 것인지, 또는 해산, 청산, 현물출자, 영업양도, 주식취득 등 사실상의 합병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결론적으로 안 제2조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일본 전범기업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실제 집행이 가능한지, 실효성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안 제2조 제2호, 3호 관련 법률자문 결과 >

회신1	<p>○ 공히 용어들의 정의가 없어 해석이 다소 자의적으로 될 여지가 있으나,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재량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됨.</p> <p>- 일본기업 : “일본국의 법령에 의해 설립 등기된 회사”와 같이 필요한 정의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p>
-----	--

회신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구매 정의 규정은 필요시 재량범위 내에서 제정 할 수 있을 것임. ○ 일본기업:정의 넣을 수 있으나, 다른 법률(법인세법)에 따라 정의나 해석이 가능 결어: 전범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정의 또는 해석의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임.
회신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제2조 1호는 '일본 전범기업' 적정해 보이나, 2호, 3호는 다소 무리가 있음. ○ '일본기업' : 일본에 본사 소재 기업인지, 대표자가 일본인인지 등 더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3) 적용대상 기관 및 금액(안 제3조)

- 안 제3조제1항은 공공구매 제한 기관을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와 시의회사무처, 시 산하 투자 기관 및 출연기관, 출자기관으로 정하고,
 - 같은 조 제2항은 공공구매 제한 대상금액을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 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이하 “국제입찰 고시” 라고 함)에서 규정한 개방대상 금액(공사 235억원, 물품 용역 3.1억원) 미만으로 규정하여 본 조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이하 “정부조달협정”이라고 함)’에 위반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 「지방계약법 제5조 제1항에서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물품 용역 계약 중에서 정부조달협정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는 행정안전부장관 고시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국제입찰 고시」에서는 ‘서울특별시는 국제 입찰에 의해 체결하는 235억원 이상의 공사, 3.1억원 이상인 물품 용역 계약 등의 경우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 ※ 정부조달협정 개정의정서 부속서2에서는 중앙정부보다 하위의 기관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기관으로서, 이 협정 부속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속서3에는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 시도시철도공사만이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조달하는 다른 모든기관’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음.

4) 시장의 책무(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5조)

- 안 제4조는 “서울특별시시장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시장은 제4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의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적, 임의적 규정으로써 시장 등에게 법적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뿐더러, 시장이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법제처 회신 의견(법제처 2014.11.3. 회신 의견제시 14-0210, 법제처 2013.3.11. 회신 의견제시 13-0061, 등 참조) 및 법률자문 등을 고려해볼 때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 및 제5조 관련 법률자문 결과 >

회신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력하여야 한다”의 임의규정으로써 시장의 고유권한 침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례 제정 가능. ○ 지방자치법: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전범기업과의 외교, 경제 국가분쟁과 관련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또는 자치사무, 지역사무라고 볼 수 있는지 우려가 있음.
회신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력하여야 한다”: 훈시적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함.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위반하지 않음: 조례제정 가능. - 다만, 시장에의 의무 부과 규정에 대하여 법률적 위임 필요(안 제5조).
회신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 및 정부조달협정 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회신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노력하여야 한다”의 임의규정으로써 강제성이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회신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서 정한 비차별 등의 조항 위배 가능성으로 상위법 위반 소지 있음 ○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규정이라 하더라도 상위법 위반이 있는 조례 제정 할 수 없을 것임.
회신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달협정,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 없음. ○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규정으로 조례 제정 할 수 있음.

- 다만, 안 제5조에서 시장에게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하고 있는 바, 지방의회가 의원발의를 통한 의결로서 「지방계약법」 등에 따른 조달에 관한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함께,
- 안 제7조는 자치구에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는 공공구매 지양 문화 조성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9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내용들이 조례 전체적으로 사실상 전범기업의 제품 구매를 배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실태조사(안 제6조)

- 안 제6조는 안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안 제3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전범기업과의 거래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본 조례안 첨부자료를 보면, 284개의 전범기업 명단을 제시하고 있는바(안 제2항 1호 관련), 이 명단은 2012년에 「강제동원조사법」 관련 위원회(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에서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기업 현황 299개 기업 중 본 조례안 발의 시 재 조사되어 현존하는 전범기업 현황임.
- 본 조례안에 따를 경우 제시한 284개소의 현존하는 강제동원 기업에 더하여 자본·주식의 이동사항을 살펴 그 명단 및 제품을 확정하여 현행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일본 전범기업(강제동원기업) 명단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 마련 등 대안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 위원회 활동이 중단(2015.12.)되어 그 현황을 알기 어렵고, 본 조례안의 일본 전범기업이 정의와 범위가 포괄적이고 방대하여 그 대상을 특정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보임.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관련 >

2010.03. 2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폐지

※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폐지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발족

약칭 : 대일항쟁기조사지원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행정기관

※ 존속기간 연장

(1차) 2012. 12. 31 (1년 연장)

(2차) 2013. 06. 30 (6월 연장)

(3차) 2013. 12. 31 (6월 연장)

(4차) 2015. 06. 30 (1년6월 연장)

(5차) 2015. 12. 31 (6월 연장)

2015. 12. 31 대일항쟁기강제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폐지

(출처: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누리집)

-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제각각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재 대상 기업 조사 등 실태조사를 하게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행정력의 많은 소모가 예상되므로, 중앙정부가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 결어

-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과는 별개로 하더라도, 전범국가 독일의 전후 진심어린 사죄와 후속 조치 이행의 효과에서 보듯이, 불법적 식민지배와 강제징용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 책임은 분명하게 남아있는 것이며, 그 이행을 통해 한·일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 따라서, 본 조례안 발의가, 대일항쟁기 일본의 반인륜적 과거사에 대한 공식 사과와 손해배상 이행을 토대로 한·일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행위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과거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서울시의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홍성룡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02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1일

발 의 자 : 홍성룡, 최응식, 김경영, 박기재,
이정인, 김태호, 최 선, 송아량,
정진술, 김 경, 채인묵, 이호대,
박순규, 노식래, 전병주, 노승재,
정재웅, 유정희, 권순선, 김제리,
김수규, 김화숙, 이승미, 봉양순,
권수정, 김평남, 한기영, 추승우,
장상기, 김상진, 김경우, 채유미,
김소영, 이은주, 우형찬, 김기덕,
조상호, 문장길, 송정빈, 경만선,
김기대, 전석기, 김호평, 김종무,
권영희, 오현정, 최기찬, 이영실,
김정태, 김혜련, 황인구, 임종국,
김춘례, 이광호, 김정환, 박기열,
이광성, 이현찬, 송도호, 유 용,
송재혁, 김호진, 박상구, 임만균,
최영주, 신정호, 김용연, 김희걸,
이병도, 문병훈, 이상훈, 성흠제,
정지권, 이태성, 정진철 의원
(75명)

1. 제안이유

일부 일본 기업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전쟁물자 제공 등을 위하여 우리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였음.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 기관 및 금액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문화 조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음에도 공식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 전범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을 강제 동원하여 국민에게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
2. 대일항쟁기 이후에 설립된 일본기업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자본으로 설립되었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업을 흡수합병한 기업

제3조(적용대상 기관 및 금액)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2. 시의회 사무처

3. 시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출자기관

② 공공구매 대상금액은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금액 미만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기관이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산 제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

하여 제3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전범기업과의 거래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자치구에 대한 권장) 시장은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 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문화조성 등) ① 시장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조성을 위하여 문화행사,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정부부처, 서울특별시교육청, 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6조(실태조사), 제8조(문화조성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 ① 단, 같은 조례안 제6조(실태조사)는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직속기관, 사업소 등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범기업(첨부자료: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299개 기업 중 현존하는 전범기업)과의 계약현황 자료를 공문으로 협조 받을 것을 전제
- ② 안 제8조제2항 중 ‘정부부처, 서울특별시교육청, 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전제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548,83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1,548,830천원으로 연평균 309,766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안 제7조(문화조성 등)에 따른 비용은 서울시 문화본부 및 시민소통기획관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업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함
 -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이 예상됨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1,548,830천원
 - 총비용 = 문화행사, 캠페인 등 문화조성 비용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문화조성 비용 (안재8조)	309,766	309,766	309,766	309,766	309,766	1,548,830
	소계(b)	309,766	309,766	309,766	309,766	309,766	1,548,830
	총비용(b-a)	309,766	309,766	309,766	309,766	309,766	1,548,830

가. 연간 문화행사 비용 : 300,000천원

▶ 문화행사 비용은 서울시 문화본부 기 추진 사업인 ‘3.1운동 100주년 보신각 타종행사’ 사업의 예산을 준용함

※ ‘3.1운동 100주년 보신각 타종행사’ 의 소요 예산(2019년) : 300,000천원

- 사업목적 :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고 시민화합 기원

- 주요내용 : 보신각 타종행사, 종로구립합창단 공연 및 태극기물결행진, 100인 만세운동 플래쉬 몹 퍼포먼스,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진전

나. 연간 캠페인 비용 : 9,766천원

▶ 캠페인 비용은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기 추진 사업인 ‘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 시민 참여 캠페인’ 사업의 예산을 준용함

※ ‘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 시민 참여 캠페인’ 의 소요 예산(2019년) : 9,766천원

- 사업목적 : 대시민 대상 독립선언·운동 등 3·1절 100주년 역사적 의미 공감 확산

- 주요내용 : 해시태그(#)와 손글씨 인증사진·영상을 활용한 릴레이 캠페인 등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주 무 관 백소영

☎ 02-2180-7954

e-mail : thdud36@seoul.go.kr

【붙임】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299개 기업 중 현존하는 전범기업

연번	전범기업
1	고차크교통(주)
2	(주)교산제작소
3	(주)구리모토철공소
4	(주)나무라조선소
5	(주)단노구미
6	(주)미라주건설
7	(주)미야지셀비지
8	(주)사가미구미
9	(주)오바야시구미
10	(주)오카베철공소
11	(주)요도시
12	(주)후지코시
13	JFE계열사
14	JFE미네랄(주)
15	JFE스틸(주)
16	JFE엔지니어링(주)
17	NS유나이티드해운(주)
18	가네마쓰닛산농림(주)
19	가스가광산(주)
20	가와사미기선(주)
21	가와사키계열사
22	가와사키운송(주)
23	가와사키중공업(주)
24	가지마건설(주)
25	가타야마빈라공업(주)
26	가타쿠라공업(주)
27	간사이기선(주)
28	간토전화공업(주)
29	고기(주)
30	고도제철(주)
31	코마츠제작소계열사-
32	고마쓰산기
33	고마쓰NTC
34	KELK(주)
35	고쿠산전기(주)
36	교와핫코기린(주)
37	구라바야시상선(주)
38	구라시에홀딩스(주)
39	구로사키하리마(주)
40	구사카베건설(주)
41	군제(주)-의류전문기업. 특히속옷!
42	나나오해륙운송(주)
43	나오쓰해륙운송(주)
44	나이가이(주)
45	나프테스코(주)
46	노무라흥산(주)

연번	전범기업
47	니가타조선(주)
48	니시마스건설(주)
49	니혼가단(주)
50	니혼건설(주)
51	니혼경금속(주)
52	니혼고주파공업(주)
53	니혼무선(주)
54	니혼수산(주)
55	니혼야마무라유리(주)
56	니혼우편선(주)
57	니혼유리(주)
58	니혼제지(주)
59	니혼조달(주)
60	니혼주조(주)
61	니혼중화학공업(주)
62	니혼차량제조(주)
63	니혼철판(주)
64	니혼카바이트공업(주)
65	니혼카본(주)
66	니혼통운(주)
67	니혼화학(주)
68	니혼흙(주)
69	니혼흙(주)
70	닛산화학공업(주)-
71	닛신제강(주)
72	닛테쓰공업(주)-
73	다마이상선(주)
74	다부치전기(주)
75	다쓰타방직(주)
76	다오카화학공업(주)
77	다이도특수강(주)
78	다이도화학공업(주)
79	다이세이건설(주)
80	다이와홀딩스(주)-가정용기자재주력
81	다이요니혼기선(주)
82	다이이치주오기선(주)
83	다이킨공업(주)-에어컨이주력
84	다이헤이요시멘트(주)
85	다이헤이요흥발(주)(주)
86	다치히기업(주)
87	데이카(주)
88	데이코쿠섬유(주)
89	데이코쿠요업(주)
90	뎃켄건설(주)
91	도나미홀딩스(주)
92	도다건설(주)
93	도비시마건설(주)
94	도아건설공업(주)
95	도와홀딩스(주)

연번	전범기업
96	도요그룹계열[3]
97	도요강판(주)
98	도요방적(주)
99	마쓰다주식회사[4]
100	도이마린관공(주)
101	도치기기선(주)
102	도카이고무공업(주)
103	도카이기선(주)
104	도카이카본(주)
105	도쿄가스(주)
106	도쿄아사이토방적(주)
107	도쿄제강(주)
108	도쿄제철(주)
109	도큐차량제조(주)-현JR히가시니혼종합차량제작소
110	도피공업(주)
111	도호그룹계열사
112	도호가스(주)
113	도호아연(주)
114	라사공업(주)
115	리코엘레믹스(주)
116	린카이닛산건설(주)
117	린화학공업(주)
118	마부치건설(주)
119	메이지해운(주)
120	모리나가제과(주)-
121	모지항운(주)
122	묘죠시멘트(주)
123	무카이시마독(주)
124	미네페아(주)오모리공장
125	미쓰비시그룹계열사-
126	미쓰비시금속(주)
127	미쓰비시상사(주)
128	미쓰비시신동(주)
129	미쓰비시전기(주)
130	미쓰비시제강(주)
131	미쓰비시중공업(주)
132	미쓰비시창고(주)
133	미쓰비시화학(주)
134	Nikon(주)-
135	미쓰이금속공업(주)
136	미쓰이농림(주)
137	미쓰이마쓰시마산업(주)
138	미쓰이스미토모건설(주)
139	미쓰이조선(주)
140	미쓰이화학(주)
141	(주)도쿄시바우라
142	도시바기계(주)
143	이비덴(주)
144	상선미쓰이오션익스퍼트(주)

연번	전범기업
145	상선미쓰이조선관리(주)
146	빈고통운(주)
147	사노야건설(주)
148	사와라이즈
149	사토공업
150	산덴교통(주)
151	산요특수제강(주)
152	산코기선(주)
153	산큐(주)
154	산키공업(주)
155	쇼와KDE(주)
156	쇼와비행기공업(주)
157	쇼와산업(주)
158	쇼와전공(주)[6]
159	쇼와철공(주)
160	스가와라건설(주)
161	스미세키홀딩스(주)
162	스미토모그룹계열사-금융등일부계열사는미쓰이그룹계열사와합병.
163	스미토모강관(주)
164	스미토모고무공업(주)
165	스미토모금속공업(주)-현재는신일본제철과합병하여신일철주금(신닛테츠스미킹)이됨.
166	스미토모금속광산(주)
167	스미토모오사카시멘트(주)
168	스미토모전기공업(주)
169	스미토모화학(주)
170	(주)스미토모금속소창-신일본제철과합병. 현재는신일철주금.
171	스즈요(주)
172	시나가와리플렉토리즈(주)
173	시미즈건설(주)
174	시미즈해운(주)
175	신니혼제철(주)-스미토모금속공업과합병하여신일철주금(신닛테츠스미킹)이됨.
176	신니혼카이중공업(주)
177	신메이공업(주)
178	신에쓰화학공업(주)
179	쓰루가해륙운송(주)
180	쓰루미(주)
181	아라이건설(주)
182	아사히유리(주)
183	아사히카세(주)
184	아소시멘트(주)
185	아이사와공업(주)
186	아이치기계공업(주)
187	아이치시계전기(주)
188	아이치제강(주)-도요타그룹계열사
189	아즈마해운(주)
190	아지노모토(주)
191	아키타해륙운송(주)
192	야마분유화(주)
193	야마하-

연번	전범기업
194	야바시공업(주)
195	양마(주)
196	오사카가스(주)
197	오사카기선(주)
198	오사카제강(주)
199	오지제지(주)
200	와코도(주)
201	요시자와석회공업(주)
202	요코하마고무(주)
203	우베금속(주)
204	우베미쓰비시시멘트(주)
205	우베흥산(주)
206	이노항운(주)
207	이노해운(주)
208	이스즈자동차
209	이시다(주)
210	이시하라산업(주)
211	이와타지자키건설(주)
212	일본건류공업(주)
213	전기화학공업(주)
214	제이와이텍스(주)
215	제팬빅터컴퍼니(주)
216	조반흥산(주)
217	(주)가나자키구미
218	(주)가미쓰제작소
219	주가이광업(주)
220	(주)고노이케구미
221	(주)고베제강소
222	(주)고이케구미
223	주고쿠도료(주)
224	주고쿠전력(주)
225	(주)구라레
226	(주)구마가이구미
227	(주)나카야마제작소
228	(주)노가미
229	(주)니치로
230	(주)니치린
231	(주)니혼제강소
232	(주)닛치스
233	(주)다이세루
234	(주)다이조
235	(주)다이헤이제작소
236	(주)다케나카공무점
237	(주)도쿠야마
238	(주)리갈코포레이션
239	(주)링크코포레이션
240	(주)마루하니치로수산
241	(주)마쓰무라구미
242	(주)미쿠니

연번	전범기업
243	(주)사쿠션가스
244	(주)세이사
245	(주)세이탄
246	(주)신가사독
247	(주)아시텍이리에
248	(주)야노철공소
249	주에쓰전기공업(주)
250	(주)오에무방기제작소
251	(주)오에무제작소
252	주오전기공업(주)
253	(주)요도가와제강소
254	(주)요타이
255	(주)이케가이
256	(주)자판에너지
257	(주)제니타카구미
258	(주)후지타
259	(주)히타치제작소계열사-
260	히타치조선(주)
261	히타치조선(주)
262	히타치항공기(주)
263	카미오카공업(주)
264	카본(주)
265	파나소닉(주)-
266	플추
267	하기모리흥산(주)
268	하자마구미(주)
269	하카타항운(주)
270	하코다테독(주)
271	한신내연기공업(주)
272	호도가야화학공업(주)
273	호쿠에쓰메탈(주)
274	훗카이도탄광기선(주)
275	후루가와기계금속(주)
276	후루가와전기공업(주)
277	후시키해륙운송(주)
278	후지보홀딩(주)
279	후지전기(주)
280	후지중공업(주)-
281	히노데우편선(주)
282	히라니시키건설(주)
283	히로시마가스(주)
284	히메지합동화물자동차(주)

※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조사